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734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3조).
- 다.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자수입, 용자상환금·차입금·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함(안 제4조).
- 라. 기금은 공무원 주택전세자금의 용자, 여유자금의 예치·예탁,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함(안 제5조).
- 마. 시장은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둠(안 제6조).

바.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사. 시장은 용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 7. 2.~7. 22.)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의(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용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등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무원 주택전세자금의 용자
2.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3.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인력개발과장
3. 기금출납원: 인력개발과 기금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기금의 운용 관련 재정담당 부서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해당연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함.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함.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소관부서의 기금 관리·운용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유자업무 위탁·대행 등)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유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5조에 따라 공무원 주택전세자금 융자 등 공무원 주거안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향후 5년(2021년~2025년)
- '서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시장방침, '20. 6.)'에 의거하여 연차별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소요비용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전세자금 지원(A) (일반회계전입금)	13,000 (10,700)	15,500 (9,200)	18,000 (9,600)	18,000 (7,600)	18,000 (5,400)	82,500 (42,500)
	예치금(B)	2,278	3,719	4,217	5,571	6,290	22,075
	소계(C=A+B)	15,278	19,219	22,217	23,571	24,290	104,575
수입	일반회계전입금(D)	10,700	9,200	9,600	7,600	5,400	42,500
	융자금회수액(E)	4,331	7,437	8,529	11,337	12,867	44,501
	이자수입(F)	247	303	370	416	452	1,788
	전년도이월액(G)	0	2,278	3,719	4,217	5,571	15,785
	소계(H=D+E+F+G)	15,278	19,219	22,217	23,571	24,290	104,575
총 비용(C-H)		0	0	0	0	0	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비	일반회계 전입금	10,700	9,200	9,600	7,600	5,400	42,500
기타	기금 내 자체조달	4,578	10,019	12,617	15,971	18,890	62,075
합계		15,278	19,219	22,217	23,571	24,290	104,575

5. 덧붙이는 의견 :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 전체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의 순증감은 발생하지 않으나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취지를 감안하여 작성하였음

6. 작성자 : 행정국 인력개발과 김정택 주무관(☎2133-5771)